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6. ~ 9.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40호
----------	--------

발의연월일 : 2019. 8. 23.

발 의 자 : 박혜정 의원, 박재원 의원

1. 제정이유

- 국기(國旗)는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중요함에도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소홀로 인해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태극기 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등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식 제고를 통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 국기의 게양일, 국기 보급사업, 국기의 점검·관리 등(안 제5조 ~ 안 제8조)
- 국기 등 선양사업, 단체 등의 지원, 표창(안 제9조 ~ 안 제11조)
-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등의 관리 및 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식 제고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가상징물”이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태극기 등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상징물 선양”이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상징물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 등 관리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관외 전입세대
2. 혼인 신고세대
3.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시장은 공공청사,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국기·깃봉 및 깃대 등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8조(국기 판매대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 관련 단체, 국기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등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상징물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2.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등 국기 선양 사업
3. 그 밖에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국기 등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국기 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2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8. 23.

1. 제안이유

-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신고 활성화 도모
- 특히 소속 직원인 신고자의 인사상 우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조직 내부의 반부패 활동 촉진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추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조례상 용어의 정의 등 명시(제1조, 제2조)
- 시민들의 부패행위 신고 권리 및 시 소속 공무원 등의 신고의무 명시(제3조)
- 부패행위 신고 기한, 방법, 처리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보, 청렴교육 이수 명령 등 인사 조치 및 부패행위 공개 근거 등 명시(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등 명시(제10조)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행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금지 및 이에 대한 구제절차 등 명시(제11조)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안내, 책임감면 규정 등 명시(제12조, 제13조)
-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에 조력한 협조자 보호규정 명시(제14조)
- 소속 직원인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표창, 인사상 가점부여 기준 및 승진 등 우대 명시(제15조)
-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을 가져 온 경우 보상금 지급 근거 명시(제16조)
- 보상금 지급 사유, 절차, 제외사유 및 지급 한도액(20억원)* 등 명시(제17조, 제18조, 제19조) * 시 재정 수입회복 또는 증대 420억원

○ 포상금 지급 사유, 절차 및 지급 한도액(2억원)* 등 명시(제20조)

* 시 예산절감 또는 재정손실 예방 280억원

○ 보상금 및 포상금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근거 명시(제21조)

○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 근거 및 절차 명시(제22조)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준용, 다른 조례와 상충될 경우 신고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 등 명시(제2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및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조(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24. ~ 8. 1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29.(여성가족과-1589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6. 24.(감사실-501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2.(기획예산실-912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3.(순천시 공고 제2019-1373호)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및 재단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부패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제4조(신고의 기한) 부패행위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사

유의 시효 기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접수하거나, 공무원 등이 속한 노동조합 또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또는 다른 기관에 감사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종결) 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대해 2회 이상 보완요구를 받은 후 1회 10일, 2회 7일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사, 감사, 조사 중이거나 처리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패행위자 처리)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무원 등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해제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에 대해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 감사 및 회계부서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 등 보호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공무원 등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았더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 또는 암시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진술, 자료 등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시장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신고자 보호 및 신고내용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자에 대해 직위해제, 분리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변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기관,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적극 조력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표창 및 인사상 가점부여)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이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표 1의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가점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승진·교육훈련 등의 인사 시 우대할 수 있다.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제16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시에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신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사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을 것
2. 부패행위에 상당한 고의가 있었을 것(단순·경미한 과실 등은 제외)

3.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었을 것
4.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시에서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지방세 등의 환수나 부과 있었을 것
5. 제4호에 따른 환수 또는 부과 등으로 인하여 시에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직접 가져 왔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
6. 부패행위 신고와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18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금액 의결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직접 행하였거나 요구,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해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정도 등

④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도록 한다.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를 알 수 없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4조의 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부패행위 증거의 제출 등 없이 단순히 의혹을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과 동일·유사한 사안으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경우
4. 새로운 증거 없이 수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 감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이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6.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이 밖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원인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될 경우

② 부패행위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나 공무원 등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들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인 경우에도 새로운 신고 내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령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사유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의 제·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의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 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계약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 3의 포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제18조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하여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소요예산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환수 등) ① 시장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적용규정) ①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에 대해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조례와 다른 순천시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가점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구 분	신 고 유 형	부 여 기 준	가 점 기 준
1	공무원 등이 금품 수수 후 자진 신고한 경우	금품가액에 관계없이 자진 신고한 횟수 기준. 다만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제공을 요구, 권고, 제의, 유인 등의 경우에는 제외	- 1회 : 0.1점 - 2회 : 0.2점 - 3회 : 0.3점
2	제16조제1호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에 수입회복 또는 증대 금액 기준(보상대상가액)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5점
		5억원 초과	1.0점
3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신고 이후 최대 5년 동안의 재정상 손실방지 또는 예산 절감예상금액(포상대상가액)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5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25점
		5억원 초과	0.5점

[별표 2]

보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제18조 제3항 관련)

1. 보상금 지급 기준금액

구 분	신 고 유 형	지 급 기 준	보 상 금 액
1	공무원 등이 금품 수수 후 자진 신고한 경우. 다만 금품 제공을 요구, 권고, 제의, 유인 등의 경우에는 제외	금품 신고액	- 금품 신고액의 50% 이내 -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금품 신고액의 30% 이내
2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	시에 수입회복 또는 증대 금액 기준(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8%
		40억원 초과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 금액의 4%로 산정

※ 비교: 보상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보상금액 산정 시 참고사항

- 가. 하나의 신고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사유가 중첩 또는 중복된 경우 신고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나. 보상금 지급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포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제20조 제3항 관련)

1.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구분	신고 유형	지급 기준	포상금액
1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개선 등)	난이도가 낮고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정도가 보통인 경우	1백만원 미만
		난이도 및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정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난이도 및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정도가 매우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큰 경우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상 손실 방지 등)	신고 이후 5년간의 재정상 손실방지 또는 예산절감의 예상금액(포상대상가액) 1억 원 이하	포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
		5억 원 초과	최대 2억원 범위에서 6천만 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5%
3	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형사처분 등)	행정상 경징계 또는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이 3인 이하인 경우	1백만원 미만
		행정상 경징계 또는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이 4인을 초과한 경우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행정상 중징계 또는 재판상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자격정지·상실 처분이 3인 이하인 경우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행정상 중징계 또는 재판상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자격정지·상실 처분이 4인을 초과하거나 금고, 징역 이상 처분이 3인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상 7백만원 미만
		재판상 금고, 징역 이상 처분이 3인을 초과한 경우	7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비고: 포상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포상금액 산정 시 참고사항

- 가.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유리하거나 포상금 산정액수가 가장 많은 신고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나. 제도개선의 난이도가 매우 낮거나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나 개선효과 등에 있어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 라.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마. 법령, 조례,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6조(보상금 지급)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시에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또는 그
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사유 등)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등 지급
- 신고에 따른 재정상 수입증대 효과 기대(비용 추계 미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39,000	-3,000	-9,000	-9,000	-9,000	-9,000
세입(a)						
세출(b)	39,000	3,000	9,000	9,000	9,000	9,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39,000	3,000	9,000	9,000	9,000	9,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39,000	3,000	9,000	9,000	9,000	9,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등 지급
- 사업기간 : 2019년 9월 ~
- 산 출 액(2019년) : 3,000천원
- 산출근거(2019년)
 - 보상금 지급기준 : 2,000,000원×1식 = 2,000,000원
 - 포상금 지급기준 : 1,000,000원×1식 = 1,0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감사실 실 장 김지식(☎ 749-5448)
공직윤리팀장 김미자(☎ 749-557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2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8. 23.

1. 제안이유

- 아파트 신축 지역,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아·통반 조정요구에 따라 아·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

2. 주요내용

- (신설) 5개 행정리, 13개 반 신설
 - [별표 1] 해룡면 신대리 중흥 에듀힐스 9차 : 4개 행정리(12개 반) 신설
 - [별표 1] 서면 지본리 산내들마을 : 1개 행정리(1개 반 신설)
- (조정) 행정리·통 분리 신설 2개소 및 법정리 변경 1개소
 - [별표 1] 외서면 장산리 분리(장산리 → 장산리, 대전리 분리)
 - [별표 1] 낙안면 신정리 법정리 변경(교촌리 → 내운리 변경)
 - ※ 조례상 변경이며, 지번은 현행 유지
 - [별표 2] 왕조2동 23통 분리(23통 → 23통, 24통 분리)
 - ※ 기존 24통~30통은 25통~31통으로 조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조(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23. ~ 8. 12.)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29.(여성가족과-1589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7. 19.(자치혁신과-1001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3.(기획예산실-923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3.(순천시 공고 제2019-137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외서면 장산리의 제3반 대전을 삭제하고, 장산리 다음에 대전리 제1반 대전을 신설하며, 외서면 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외서면	장산	장산	제1반 제2반 제1반	사봉 영내 대전
계	8	대전 15	25	

별표 1 중 낙안면 교촌리(법정리)의 신정리(행정리)를 삭제하고, 내운리(법정리)에 신정리(행정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낙안면	교촌	교촌	제1반 제2반	상동 하동
	내운	내동	제1반 제2반	동편 서편
		심내 운동	제1반	심내 운동
	창녕	신정 창녕	제1반 창녕	신정 창녕

별표 1 중 해룡면 신대28리 다음에 신대29리, 신대30리, 신대31리, 신대32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해룡면 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해룡면	신대	신대28	제1반	807동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신대29	제1반	신대리 1965번지
			제2반	중흥 에듀힐스 901동
			제3반	902동
		신대30	제1반	903동
			제2반	904동
			제3반	905동
		신대31	제1반	906동
			제2반	907동, 근린생활시설
			제3반	908동
		신대32	제1반	909동
			제2반	910동
			제3반	911동
	대안	대안	제1반	912동
	⋮	⋮	⋮	대안
계	18	97	224	⋮

별표 1 중 서면 구룡리 다음에 산내들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서면 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	⋮	⋮	⋮	⋮
서면	홍대지본	홍대지본	제1반	홍대지본
		구룡	제1반	웃돔
		산내들	제2반	아랫돔
		금평	제1반	산내들
	⋮	⋮	제1반	동편
계	14	63	92	⋮

별표 1 중 총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	⋮	⋮	⋮	⋮
월등면	계월	이문	제2반	이문
계	10	23	30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총계	163	461	697	

별표 2 중 왕조2동 23통, 24통, 25통, 26통, 27통, 28통, 29통, 30통을 삭제하고, 22통 다음에 23통, 24통, 25통, 26통, 27통, 28통, 29통, 30통, 31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	⋮	⋮	⋮
왕조2동	22	6	왕지아파트 102동 901~911호, 1001~1011호, 1101~1111호, 1201~1211호, 1302~1311호, 1402~1411호, 1502~1511호
	23	1	조례동 1804 중흥파크맨션 301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105~1105호, 상가
		2	중흥파크맨션 301동 106~1106호, 107~1107호, 108~1108호, 109~1109호
		3	중흥파크맨션 30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4~1104호
		4	중흥파크맨션 302동 106~1206호, 107~1207호, 108~1208호, 109~1209호
	24	1	중흥파크맨션 303동 101~1001호, 102~1002호, 103~1303호, 105~1305호
		2	중흥파크맨션 303동 106~1406호, 107~1407호, 108~1408호, 109~1409호
		3	중흥파크맨션 304동 101~14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5~1505호
		4	중흥파크맨션 304동 106~1506호, 107~1507호, 108~1508호, 109~1409호
	25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1동 101~1401호, 202~1402호, 203~1403호
		2	101동 105~1405호, 206~1406호, 107~1407호
		3	10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4	102동 105~1205호, 106~1206호, 107~1207호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26	5	111동 101~1501호, 102~1502호, 상가 111동 103~1503호, 105~1505호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3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2	103동 105~1205호, 106~1206호, 107~1207호
		3	104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4	104동 105~1105호, 106~1106호, 107~1107호
		5	105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105~1105호
	27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6동 101~1501호, 102~1502호
		2	107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3	108동 101~1501호, 102~1502호
		4	109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5	110동 101~1501호, 102~1502호
	28	1	조례동 1818-1~1818-6, 1819-1~1819-6, 1821-1~1821-2, 1823-1~1823-9, 1825-1~1825-12, 1826-1~1826-5, 827-1~1827-12, 1828-1~1828-12, 829-1~1829-7, 1830-1~1830-9
		2	64, 65-1, 65-6, 66, 68, 69, 69-8, 69-9, 70-2, 70-7, 70-9, 70-10, 72-2, 72-11, 72-15, 72-23, 72-40, 72-44, 72-46, 73-2, 1831-1~1831-9, 1832, 1832-1~1832-15, 1833-1~1833-10, 1834-1~1834-5
	29	1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1동 101~1501, 102~1502호 201동 103~1503, 105~1505호
		2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1동 106~1506, 107~1507호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3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2동 101~801, 102~1302호 202동 103~1303, 105~1305호 202동 106~1306, 107~1307호
		4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3동 101~701, 102~1202호 203동 103~1203, 105~1205호 203동 106~1206, 107~1207호
		5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4동 101~1101, 102~1102호 204동 103~1103, 105~1105호 204동 106~1106, 107~1107호
	30	1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5동 101~1501, 102~1502호 205동 103~1503, 105~1505호
		2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5동 106~1506, 107~1507호
		3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1~1301, 102~1302호 206동 103~1303, 105~1305호
		4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6~1306, 107~1307호 206동 108~1308호
		5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7동 101~401, 102~402호 207동 103~403, 105~405호 207동 106~406, 107~407호 208동 101~401, 102~402호 208동 103~403, 105~405호, 상가
	31	1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2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3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외서면	장산	장산	제1반 제2반 제3반	사봉 영내 대전	외서면	장산	장산	제1반 제2반	사봉 영내
계	8	14	25		계	<신설> 8	<삭제> 대전 15	제1반 25	대전
⋮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낙안면	교촌	교촌	제1반 제2반 신정	상동 하동 신정	낙안면	교촌	교촌	제1반 제2반	상동 하동
	내운	내동	제1반 제2반 제1반	동편 서편 심내		내운	내동	제1반 제2반 제1반	동편 서편 심내
	창녕	창녕	제1반	운동 창녕		<신설> 창녕	심내 운동 신정 창녕	제1반 제1반 제1반	운동 신정 창녕
⋮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해룡면	신대 대안	신대28 대안	제1반 제1반	807동 대안	해룡면	신대	신대28	제1반	807동 신대리 1965번지 중흥 에듀힐스 901동 902동 903동 904동 905동 906동 907동, 근린생활시설
계	18	93	212			<신설>	신대29	제1반	908동 909동 910동 911동
							신대30	제2반 제3반 제1반 제2반 제3반	
							신대31	제1반 제2반 제3반	
							신대32	제1반 제2반	

현행					개정안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대안	대안	제3반 제1반	912동 대안
					계	18	97	224	
⋮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서면	홍대 지본	홍대 지본 구룡	제1반 제1반 제1반 제2반 제1반	홍대 지본 웃돔 아랫돔 동편	서면	홍대 지본	홍대 지본 구룡	제1반 제1반 제1반 제2반 제1반	홍대 지본 웃돔 아랫돔 산내들 동편
계	14	62	91		계	14	63	92	
⋮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월등면	계월	이문	제2반	이문	월등면	계월	이문	제2반	
계	10	23	30		계	10	23	30	
총계	163	455	684		총계	163	461	697	
[별표 2]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동명	반명	관할구역		동명	동명	반명	관할구역	
왕조2동	22	6	왕지아파트 102동 901~911호, 1001~1011호, 1101~1111호, 1201~1211호, 1302~1311호, 1402~1411호, 1502~1511호		왕조2동	22	6	왕지아파트 102동 901~911호, 1001~1011호, 1101~1111호, 1201~1211호, 1302~1311호, 1402~1411호, 1502~1511호	
	23	1	조례동 1804 중흥파크맨션 301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105~1105호, 상가			23	1~8	<삭제>	
		2	중흥파크맨션 301동 106~1106호, 107~1107호, 108~1108호, 109~1109호			24	1~5	<삭제>	
		3	중흥파크맨션 302동 101~1201호, 102~ 1202호, 103~1203호, 104~1104호			25	1~5	<삭제>	
		4	중흥파크맨션 302동 106~1206호, 107~ 1207호, 108~1208호, 109~1209호			26	1~5	<삭제>	
		5	중흥파크맨션 303동 101~1001호, 102~1002호, 103~1303호, 105~1305호			27	1~2	<삭제>	
		6	중흥파크맨션 303동 106~1406호, 107~1407호, 108~1408호, 109~1409호		<신설>	28	1~5	<삭제>	
						29	1~5	<삭제>	
						30	1~3	<삭제>	
						23	1	조례동 1804 중흥파크맨션 301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105~1105호, 상가	

현행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7	중흥파크맨션 304동 101~14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5~1505호			2	중흥파크맨션 301동 106~1106호, 107~1107호, 108~1108호, 109~1109호
		8	중흥파크맨션 304동 106~1506호, 107~1507호, 108~1508호, 109~1409호			3	중흥파크맨션 302동 101~1201호, 102~ 1202호, 103~1203호, 104~1104호
		24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1동 101~1401호, 202~1402호, 203~1403호	4
	2		101동 105~1405호, 206~1406호, 107~1407호	24	1	중흥파크맨션 303동 101~1001호, 102~1002호, 103~1303호, 105~1305호	
	3		10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2	중흥파크맨션 303동 106~1406호, 107~1407호, 108~1408호, 109~1409호	
	4		102동 105~1205호, 106~1206호, 107~1207호		3	중흥파크맨션 304동 101~14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5~1505호	
	5		111동 101~1501호, 102~1502호, 상가 111동 103~1503호, 105~1505호		4	중흥파크맨션 304동 106~1506호, 107~1507호, 108~1508호, 109~1409호	
	25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3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25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1동 101~1401호, 202~1402호, 203~1403호	
		2	103동 105~1205호, 106~1206호, 107~1207호		2	101동 105~1405호, 206~1406호, 107~1407호	
		3	104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3	10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4	104동 105~1105호, 106~1106호, 107~1107호		4	102동 105~1205호, 106~1206호, 107~1207호	
		5	105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105~1105호		5	111동 101~1501호, 102~1502호, 상가 111동 103~1503호, 105~1505호	
	26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6동 101~1501호, 102~1502호	26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3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2	107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2	103동 105~1205호, 106~1206호, 107~1207호	
		3	108동 101~1501호, 102~1502호		3	104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4	109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4	104동 105~1105호, 106~1106호, 107~1107호	
		5	110동 101~1501호, 102~1502호		5	105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105~1105호	
	27	1	조례동 1818-1~1818-6, 1819-1~1819-6, 1821-1~1821-2, 1823-1~1823-9, 1825-1~1825-12, 1826-1~1826-5, 827-1~1827-12, 1828-1~1828-12, 829-1~1829-7, 1830-1~1830-9	27	1	조례동 1820 연동대주 1차아파트 106동 101~1501호, 102~1502호	
		2	64, 65-1, 65-6, 66, 68, 69, 69-8, 69-9, 70-2, 70-7, 70-9, 70-10, 72-2, 72-11, 72-15, 72-23, 72-40, 72-44, 72-46, 73-2, 1831-1~1831-9, 1832, 1832-1~1832-15, 1833-1~1833-10, 1834-1~1834-5			2	107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28	1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1동 101~1501, 102~1502호 201동 103~1503, 105~1505호			3	108동 101~1501호, 102~1502호
		2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1동 106~1506, 107~1507호			4	109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5	110동 101~1501호, 102~1502호
				28	1	조례동 1818-1~1818-6, 1819-1~1819-6, 1821-1~1821-2, 1823-1~1823-9, 1825-1~1825-12, 1826-1~1826-5, 827-1~1827-12, 1828-1~1828-12, 829-1~1829-7, 1830-1~1830-9	

현행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3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2동 101~801, 102~1302호 202동 103~1303, 105~1305호 202동 106~1306, 107~1307호			2	64, 65-1, 65-6, 66, 68, 69, 69-8, 69-9, 70-2, 70-7, 70-9, 70-10, 72-2, 72-11, 72-15, 72-23, 72-40, 72-44, 72-46, 73-2, 1831-1~1831-9, 1832, 1832-1~1832-15, 1833-1~1833-10, 1834-1~1834-5			
			4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3동 101~701, 102~1202호 203동 103~1203, 105~1205호 203동 106~1206, 107~1207호	29	1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1동 101~1501, 102~1502호 201동 103~1503, 105~1505호
							5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4동 101~1101, 102~1102호 204동 103~1103, 105~1105호 204동 106~1106, 107~1107호
		29				1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1동 101~1501, 102~1502호 201동 103~1503, 105~1505호	2
			2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3동 101~701, 102~1202호 203동 103~1203, 105~1205호 203동 106~1206, 107~1207호		3	
						3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1~1301, 102~1302호 206동 103~1303, 105~1305호			4
		4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6~1306, 107~1307호 206동 108~1308호				5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4동 101~1101, 102~1102호 204동 103~1103, 105~1105호 204동 106~1106, 107~1107호	
			5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7동 101~401, 102~402호 207동 103~403, 105~405호 207동 106~406, 107~407호 208동 101~401, 102~402호 208동 103~403, 105~405호, 상가			30	1
		30				1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2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1~1301, 102~1302호 206동 103~1303, 105~1305호		3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6~1306, 107~1307호 206동 108~1308호
		3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7동 101~401, 102~402호 207동 103~403, 105~405호 207동 106~406, 107~407호 208동 101~401, 102~402호 208동 103~403, 105~405호, 상가	4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6~1306, 107~1307호 206동 108~1308호
4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6동 106~1306, 107~1307호 206동 108~1308호		5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7동 101~401, 102~402호 207동 103~403, 105~405호 207동 106~406, 107~407호 208동 101~401, 102~402호 208동 103~403, 105~405호, 상가						
	5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7동 101~401, 102~402호 207동 103~403, 105~405호 207동 106~406, 107~407호 208동 101~401, 102~402호 208동 103~403, 105~405호, 상가		31	1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2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3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3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4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4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5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5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6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6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7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7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8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8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9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9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0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0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1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1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2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2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3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3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4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4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1815-1~1815-16, 1816-1~1816-9, 1817-1~1817-4 10, 11, 11-10, 12, 13, 13-1, 13-3, 14, 18-1, 19-2, 20, 21-1, 40, 57-8, 59-1, 60-2, 60-4, 126-1, 128-1~128-2, 129, 134, 135-1, 138, 139, 147-7~147-11, 1531-2	15		조례동 1805-1~1805-13, 1806, 1807, 1808-1~1808-16, 1809-1~1809-16, 1810-1~1810-8 1811, 1812-1~1812-8, 1813-1~1813-8, 1814-1~1814-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 이·통반장 임명(7개 이·통, 13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아파트 신축 지역, 인구 과다 통·반, 택지조성에 따른 전원마을 등 이·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이통장	841	848	7	
반 장	2,313	2,326	1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118,050	-23,610	-23,610	-23,610	-23,610	-23,610
세입(a)						
세출(b)	118,050	23,610	23,610	23,610	23,610	23,61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18,050	23,610	23,610	23,610	23,610	23,610
국 비						
도 비						
시 비	118,050	23,610	23,610	23,610	23,610	23,61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3,610천원/년 (이·통장 7명/반장 13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20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7\text{명} = 16,800,000\text{원}$
 - 이·통장 상여금 : $200,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7\text{명} = 2,800,000\text{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text{원} \times 2\text{회(월)} \times 12\text{월} \times 7\text{명} = 3,360,000\text{원}$
 - 반장 수당 : $25,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13\text{명} = 650,000\text{원}$

※ 참고 : 2020년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 인상시 비용추계

- 소요예산 : 33,410천원/년 (이·통장 7명/반장 13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30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7\text{명} = 25,200,000\text{원}$
 - 이·통장 상여금 : $300,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7\text{명} = 4,200,000\text{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text{원} \times 2\text{회(월)} \times 12\text{월} \times 7\text{명} = 3,360,000\text{원}$
 - 반장 수당 : $25,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13\text{명} = 650,000\text{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조태훈(☎749-5453)
자치행정팀장 양영만(☎749-5625)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28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9. 8. 23.

1. 제안이유

-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정비

2. 주요내용

-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순천시 역전2길 21(조곡동)”에서 “순천시 자경1길 13(조곡동)”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15. ~ 8.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12.(여성가족과-1479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4.(기획예산실-81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15.(순천시 공고 제2019-1298호)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란의 “순천시 역전2길 21(조곡동)”을 “순천시 자경1길 13(조곡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면동	소 재 지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731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7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40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25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30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8-10
서 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서면 임촌동길 94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 12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
향 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임청대길 1(옥천동)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북정2길 63(매곡동)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삼산로 3(석현동)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자경1길 13(조곡동)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덕연로 41(연향동)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풍덕1길 40(풍덕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남정5길 1(남정동)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청사1길 43(저전동)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중앙로 22(장천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강남로 128(동외동)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순천만길 27(덕월동)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조례신대길 6(조례동)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왕궁길 50(조례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u>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th><th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h></tr> </thead> <tbody> <tr><td>승주읍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731</td></tr> <tr><td>주암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7</td></tr> <tr><td>송광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td></tr> <tr><td>외서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40</td></tr> <tr><td>낙안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td></tr> <tr><td>별량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25</td></tr> <tr><td>상사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30</td></tr> <tr><td>해룡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8-10</td></tr> <tr><td>서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서면 임춘동길 94</td></tr> <tr><td>황전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 12</td></tr> <tr><td>월등면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td></tr> <tr><td>향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임청대길 1(옥천동)</td></tr> <tr><td>매곡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북정2길 63(매곡동)</td></tr> <tr><td>삼산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삼산로 3(석현동)</td></tr> <tr><td>조곡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역전2길 21(조곡동)</td></tr> <tr><td>덕연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덕연로 41(연향동)</td></tr> <tr><td>풍덕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풍덕1길 40(풍덕동)</td></tr> <tr><td>남제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남정5길 1(남정동)</td></tr> <tr><td>저전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청사1길 43(저전동)</td></tr> <tr><td>장천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중앙로 22(장천동)</td></tr> <tr><td>중앙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강남로 128(동외동)</td></tr> <tr><td>도시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순천만길 27(덕월동)</td></tr> <tr><td>왕조1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조례신대길 6(조례동)</td></tr> <tr><td>왕조2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왕궁길 50(조례동)</td></tr> </tbody> </table>	읍면동	소재지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731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7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40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25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30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8-10	서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서면 임춘동길 94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 12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	향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임청대길 1(옥천동)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북정2길 63(매곡동)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삼산로 3(석현동)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역전2길 21(조곡동)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덕연로 41(연향동)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풍덕1길 40(풍덕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남정5길 1(남정동)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청사1길 43(저전동)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중앙로 22(장천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강남로 128(동외동)	도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순천만길 27(덕월동)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조례신대길 6(조례동)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왕궁길 50(조례동)	[별표] <u>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u>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th><th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h></tr> </thead> <tbody> <tr><td>승주읍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주암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송광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외서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낙안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별량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상사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해룡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서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황전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월등면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향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매곡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삼산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조곡동 행정복지센터</td><td>순천시 자경1길 13(조곡동)</td></tr> <tr><td>덕연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풍덕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남제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저전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장천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중앙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도시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왕조1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왕조2동 행정복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읍면동	소재지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서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향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자경1길 13(조곡동)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도시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읍면동	소재지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731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7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40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25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30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8-10																																																																																																				
서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서면 임춘동길 94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 12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																																																																																																				
향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임청대길 1(옥천동)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북정2길 63(매곡동)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삼산로 3(석현동)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역전2길 21(조곡동)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덕연로 41(연향동)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풍덕1길 40(풍덕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남정5길 1(남정동)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청사1길 43(저전동)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중앙로 22(장천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강남로 128(동외동)																																																																																																				
도시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순천만길 27(덕월동)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조례신대길 6(조례동)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왕궁길 50(조례동)																																																																																																				
읍면동	소재지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서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향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자경1길 13(조곡동)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도시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41호
----------	--------

발의연월일 : 2019. 8. 23.

발 의 자 : 장숙희, 이복남,
나안수 의원

1. 제정이유

-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의 우수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순천시 소재 대학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가 우리시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자료제출의 요구 등(안 제5조 ~ 안 제11조)
- 재정지원, 지원사업의 신청 등(안 제12조 ~ 안 제13조)
- 수당 지급,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6.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전라남도 : 여수시, 광양시

○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 : 경북 경주시 등 5개 시·군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순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종합적인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담당 국장, 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및 산·관·학 협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지방대학의 학술(학문), 교육(인력양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사업비 지급 등
3.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4. 지방대학의 산·관·학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지역산업 혁신, 대학자원 활용 등을 위한 사업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방대학 등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학교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의 소요경비			
총 사업 비 (원)	시비보조(원)	자체부담(원)	기 타(원)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 내용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함.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2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8. 23.

1. 제안이유

- 순천의 창업확산 및 창업도시 브랜드 제고를 통해 일자리창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 및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창업 지원 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창업 지원사업 및 창업 경진대회 개최(안 제4조 ~ 제5조)
- 창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 전문단구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 투자유치 등(안 제12조 ~ 제14조)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0조)
- 홍보, 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특례보증, 표창 및 포상(안 제21조 ~ 제24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붙임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23. ~ 2019. 8. 1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30.(여성가족과-1601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7. 23.(기획예산실-9243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3.(기획예산실-924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3.(순천시 공고 제2019-1380호)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창업 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4. “창업 지원시설”이란 창업 과정에서 지원되는 창업 공간, 교육, 컨설팅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5. “기업 지원시설”이란 회계·세무·법률 전문가 또는 기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금융기관 등 “창업 지원시설”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 촉진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이하 “창업자 등”이라 한다)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성공·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경영·기술 지원
4.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5. 회계·세무·법률 및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지원
6.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7. 창업박람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지원
8.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지원
9.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는 시상금과 제4조에 따른 창업 지원 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지원조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창업자 등의 발굴·육성
 2. 창업 지원정책 수립
 3. 창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
 4. 지원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5. 지원시설 입주(신청)자의 입주 승인 및 취소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창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창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창업 지원시설 운영자
3.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5. 창업 지원시설 입주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창업 지원사업 추진 및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지원사업의 수행자, 경진대회 심사위원 및 자문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자 등과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자 등과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 지원시설 및 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지급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원시설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지원시설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시설 운영규정) 지원시설 운영 책임자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원시설 운영 위탁의 철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철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시설 입주) ① 지원시설 입주 대상은 공개모집 또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선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②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입주시킬 수 있다.

제21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특례보증)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조(목적)

- 순천시에 소재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조례안 제4조(창업 지원사업)

- 창업 공간 지원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업 경영·기술 지원
-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 회계·세무·법률 및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 창업박람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지원
-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 조례안 제5조(창업 경진대회 개최)

-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등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는 시상금과 제4조에 따른 창업 지원 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제공

○ 조례안 제15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16조(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 지원시설 및 기업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창업 지원사업 추진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 교육·컨설팅비, 시제품제작비, 홍보·마케팅비, 행사참여비, 주거비 등 지원
- 창업 경진대회 개최 :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 창업 지원시설 운영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0,877,000	-290,000	-1,300,000	-2,300,000	-3,300,000	-3,687,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0,877,000	290,000	1,300,000	2,300,000	3,300,000	3,687,000
지원사업 추진	9,000,000	0	1,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경진대회 개최	1,450,0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지원시설 운영	427,000	0	10,000	10,000	10,000	397,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0,877,000	290,000	1,300,000	2,300,000	3,300,000	3,687,000
시 비	10,877,000	290,000	1,300,000	2,300,000	3,300,000	3,687,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창업 지원사업 추진 : 1,000,000천원
 - 창업기업 육성(사업화 지원) : 100,000,000원 × 5개소 = 500,000,000원
 - 창업기업 육성(거주비 등 지원) : 100,000,000원 × 5개소 = 500,000,000원
 - ※ 1개소당 최대 3차년도까지 지원 예정 (2차년도 : 10개소, 3차년도 15개소)
- 창업 경진대회 개최 : 290,000천원
 - 경진대회 행사 운영 : 170,000천원
 - 시상금 : 120,000천원
 - 최종 우승팀 : 1위 105,000천원 / 2위 10,000천원 / 3위 5,000천원

○ 창업 지원시설 운영(2023년~) : 397,000천원

- 인건비 : 87,646천원
 - 시설장 : 2,430,194원 × 1명 × 12월 = 29,163천원
 - 직 원 : 1,624,503원 × 3명 × 12월 = 58,483천원
 - 운영비 : 49,354천원
 - 사무관리비 외 1식 : 44,55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400,000원 × 12월 = 4,800천원
 - 재료비 : 60,000천원
 - 시제품 제작 등 재료비 지원 : 5,000,000원 × 12월 = 60,000천원
 - 교육, 프로그램(엑셀러레이팅 등) 운영 등 : 200,000천원
- ※ 사전 지원시설(2020년 ~ 2022년) 운영비 : 1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우수한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경진대회 개최와 지원사업 추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현재 지원시설 구축 단계로 2023년 운영 예정인 바, 지원시설의 규모와 내부시설 설계 등에 따라 세부 세출사항과 임대료 세입사항 등이 조정·결정됨에 따라 정확한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8.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과장 이재성 (☎ 4403)
창업보육센터TF팀장 김동호 (☎ 3231)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3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8. 23.

1. 제안이유

- 평상시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주도의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과 협력위원회 재정비로 지역차원의 유기적인 안전관리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 위원회 구성요건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제1호)
- 위원회 구성요건에 홍보·보도 등을 위한 자격요건 항목을 추가(안 제2조제4항제3호)
- 조문의 불분명한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구 수정(안 제3조제1호, 제3호, 제6호, 제4조제1호~제2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2019. 6. 17 ~ 7. 7.):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6. 24.(여성가족과-1347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6. 15.(기획예산실-736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6. 17.(순천시 공고 제2019-1164호)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30명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민간단체 대표”를 “NGO 등 시민단체 대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분위기 조성 등 홍보·보도를 위한 언론인

제3조제1호 중 “활동에 관한”을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요소 및”을 “위험요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관련사항 등”을 “관련사항 등에 대한 협력·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위주로 재난안전”을 “위주로 안전문화운동 등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강화 및 재난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구”를 “재난수습·복구”로, “지원”을 “구호”로, “활동”을 “지원 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u>20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조(구성) ----- ----- ----- <u>30명 내외</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 ----- ----- -----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u>민간단체 대표</u>	1. ----- ----- <u>NGO 등 시민단체 대표</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신설 >	3. <u>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분위기 조성 등 홍보·보도를 위한 언론인</u>
3. (생략)	4. (현행 3호와 같음)
제3조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 -----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u>활동에 관한 협의</u>	1. ----- <u>활동에 관한 사항</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3. ----- <u>또는</u>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u>관련 사항 등</u>	6. ----- ----- <u>관련사항 등에 대한 협력·지원</u>

현행	개정안
제4조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 ----- -----
1. 평상시 :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1. ----- -- 위주로 안전문화운동 등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강화 및 재난안전 ----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2. ----- 재난수습·복구 ----- 구호 ----- 지원 활동 ---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3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8. 23.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규정 보완(안 제2조)
- 단장 해임 사유 신설(안 제4조)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규정 보완(안 제5조제2항)
- 여비 지급규정 보완(안 제8조제8항, 제9항, 제10항)
-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1. ~ 7.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17.(여성가족과-7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6. 26.(기획예산실-783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1.(순천시 공고 제2019-1238호)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순천시 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순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순천시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

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축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순천시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 위
촉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대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

본인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순천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cm)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순천시장 (인)

바탕 배경에 순천시 상징(휘장) 삽입

↑
7.
7
cm
↓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 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의
의
의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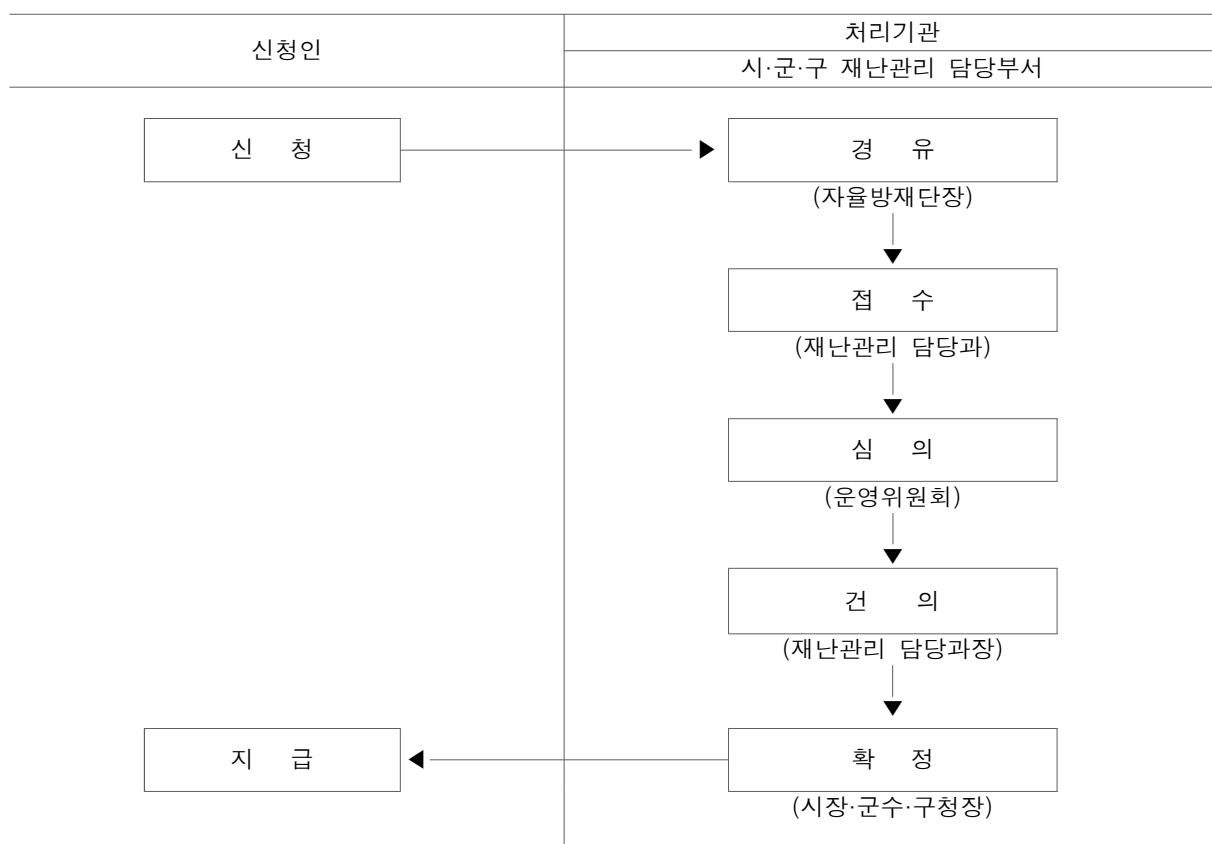
단장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03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8. 23.

1. 제안이유

-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2017. 1. 28.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규칙으로 정하고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23. ~ 8. 1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3.(기획예산실-92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3.(순천시 공고 제2019-1381호)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